

초국경교육(TNE) 확대에 따른 자격 인정과 질보장 과제

제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 Korea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는 한국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아 한국의 국가학위정보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업무를 수행

발행일 2026년 2월

작성 및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

문의 02-3919-3914, 3919

I 들어가는 글

- 최근 한국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임. 대표적으로 2023년 발표된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순 유학 형태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국제협력 전략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것이 초국경교육(Transnational Education, 이하 TNE)임. 기존과 같이 국외에서의 유학 방식과 달리, TNE는 학생들에게 있어 물리적 이동 없이도 명문 대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안임. 특히 저비용, 고접근성, 자국 내 학업 지속 가능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중저소득 국가 학생들과 기업체 중심 고등교육 수요층의 대안적 선택지로 활용됨. 이에 따라 고등교육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과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 제공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국제 브랜치 캠퍼스, 20개 이상의 국제 공동대학이 존재함¹⁾.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약 25%가 TNE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TNE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특히 합작대학·공동대학(joint universities)과 트윈닝과 같은 연계과정 중심으로 TNE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²⁾.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도 TNE 형태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옴³⁾.
- 유네스코는 2019년 11월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⁴⁾」을 채택하였고 한국도 2025년 3월 협약 국내 비준을 완료하였음. 동 협약은 국경 간 고등교육 자격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정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국제 공동 학위(international joint degrees)나 다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부분이수 학점과 자격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300+
국제 브랜치 캠퍼스



20+
국제 공동 대학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약 25%가
초국경교육(TNE)에 참여중

〈그림 1〉 세계 TNE 공급 현황

1) Cross-Border Education Research Team. (2021). List of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https://cbert.org/>; Knight, J. and Liu, Q. (2019). "International program and provider mobility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trends, challenges and issues Resea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8(1), Article 3.

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2024).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Scenarios. 6th IAU Global Survey Report. Paris, France.

3) Huang, F. (2007).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A Focus on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 in Asia."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 421-432.

4)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은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학생 및 전문가의 이동성(mobility) 강화를 위해 마련됨.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제4절]

제6조 부분 학습 및 사전 학습의 인정

3. 국제 공동 학위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 중 최소한 하나의 국가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문서화되거나 인증된 부분적 수료는 하나의 국가에서 취득한 부분 학습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TNE의 경우 각국의 법, 제도 등의 차이로 자격 인정의 불일치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보장이나 자격 인정 체계가 작동해야 함. TNE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부실 운영·사기적 자격(fraudulent qualifications)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TNE가 국가 교육체계 바깥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학습자 보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질보장 장치가 필요함⁵⁾.
- 본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과 연결하여 TNE의 개념과 유형, 주요 사례, 자격 인정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 특히 TNE 학위의 인정과 관련된 향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정책결정자 간의 이해 공유를 도모하고자 함.

II

TNE 정의와 용어의 도입

1) TNE 정의

- 학술적으로 TNE의 정의에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광의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제공자의 국가 간 이동성⁶⁾’, 구체적으로는 ‘학위나 자격 수여기관이 소재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 위치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⁷⁾’로 정의가 가능함. 즉, 학위가 발급되는 학위수여국(awarding country, sending country, home country)과 제공대학(awarding institution) 및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유치국(host country, receiving country)과 유치대학(providing institution, host institution)이 서로 다른 구조임(〈표 1〉 참조).

〈표 1〉 TNE 주요 행위 주체 및 개념

구분	의미	유사 표현
학위수여국	해당 교육과정의 학위를 법적으로 수여하는 대학이 속한 국가	Awarding country / Sending country / Home country
유치국	실제 교육이 물리적으로 운영되며 학습자가 소재하는 국가	Host country / Receiving country
제공대학	학위 명의를 귀속되는 대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권한을 가진 대학	Awarding institution / Degree-awarding institution / Home institution
유치대학	유치국 내에서 강의, 학생 지원, 시설 제공 등 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우에 따라 현지 협력 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	Host institution / Providing institution / Delivery institution / Local partner

5) UNESCO/Council of Europe. (2025). Draft version of the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provision of transnation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Convention of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Strasbourg/Paris, 15 September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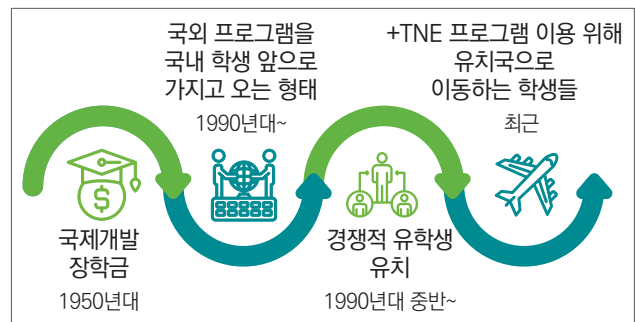
6) Knight, J. (2016). "Transnational Education Remodeled: Toward a Common TNE Framework and Definition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20(1), 34-47.

7) UNESCO/Council of Europe. (2021).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provision of transnational education.

- 최근 UNESCO/Council of Europe(2025, p.7)에서 TNE를 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⁸⁾.
 - 초국경 교육(Transnational Education, TNE)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운영되던 고등교육 제도나 교육 방식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어 현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때에 따라 이러한 교육체계가 특정 국가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 이 과정에서는 교수자, 학습자, 지식, 교육 콘텐츠,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등이 국가 또는 제도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며, 해당 대학이 소재한 국가로 학생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활용됨. 여기에는 해외 분교·캠퍼스, 공동·복수학위,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트위닝 등이 포함됨.

2) TNE 용어 도입 과정⁹⁾

- 1950년대부터 고등교육의 국제적 관심사는 ‘학생의 이동’이었으며, 당시에는 이것이 국제개발의 영역에서 장학사업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짐.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국내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닌 ‘국외 프로그램을 국내 학생들 앞으로 가지고 오는 고등교육 형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장학사업에서 경쟁적인 유학생 유치로 전환이 되는 경향이 있었음. 즉, 사실상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일종의 ‘차선택’으로 취했던 것이 초창기의 TNE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 TNE 용어의 도입 과정

- 그러나 그 후 TNE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유치국의 내국인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무엇보다 TNE 프로그램만을 목적으로 해당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어왔음. 따라서 최근 TNE 개념은 TNE 프로그램이 학생의 앞으로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유치국으로 직접 이동하는 학생들까지도 고려해야 함.

III TNE 형태 소개

1) TNE 유형 정의의 다양성

- TNE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TNE를 보는 관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형화하는 작업이 간단하지만은 않음. 소속 국가가 다른 기관 간 교육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교육 제공자의 독립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자본과 거버넌스가 국경을 넘는 개념으로서의) 기관 진출과 프로그램 및 교수 인력이 이동하는 프로그램 진출을 기반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그러한 상위 단계의 구분을 제외하고 하위 유형만 보게 되면 보통 네 가지 정도의 형태 및 기타 유형으로 구분이 됨¹⁰⁾.

8) UNESCO/Council of Europe. (2025). Draft version of the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provision of transnation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Convention of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Strasbourg/Paris, 15 September 2025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9) Knight, J. (2016). "Transnational Education Remodeled: Toward a Common TNE Framework and Definition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20(1), 34-47.; Schueller, J. (2023). "Transnational Education, labor market outcomes and graduate employability: a scoping review",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8(2), 196-216. 등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10) Burgess, P. & Berquist, B. (2014). Cross-border delivery, in Deardorff, D. K., Healy, J. & Admas, T. (Eds.). *The SA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pp.325-342). London: Sage/ 여기서 국제 브랜치 캠퍼스,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트위닝, 원격교육 총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나, 본고에서는 기타 유형에서 밸리데이션(validation)과 함께 원격교육을 다룸.

2) TNE 유형 분류

■ 국제 브랜치 캠퍼스

- 제공대학이 국외에 분교 및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국외 캠퍼스는 국내 대학의 일부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시킨다는 개념이고 학위는 국내 학위가 수여됨. 국외 분교는 해당 국가의 법이나 승인 절차 등을 모두 따라야 하며 학위는 국외 분교의 학위가 수여됨(조건 충족 시 국내 학위 수여도 가능).

■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 협정을 맺은 두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공동 혹은 복수학위를 수여함. 복수학위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소속 대학의 학위증과 더불어 협약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외국대학의 학위증도 함께 받는 것임. 공동학위는 2개 이상의 대학이 협약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이 각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과정을 수료하면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기관(장)명으로 수여되는 학위임.

■ 프랜차이즈(교육과정 수출)

- 제공대학이 학위 수여, 질 관리, 프로그램 및 교원을 제공하고 현지 유치대학에서는 시설과 학생을 제공하는 형태임.

■ 트위닝(2+2, 3+1)

- 해외 유치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2년 혹은 3년을 수학한 후 국내 제공대학으로 이동하여 남은 기간을 수학하고 국내 제공대학의 학위를 수여 받음(협약에 따라 현지 유치대학 학위 수여도 가능). 해외 유치대학에서의 프로그램은 국내 제공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동일함.

■ 기타 유형

- 밸리데이션(validation): 학위수여국의 제공대학에서 '유치국의 유치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검토·승인하고, 유치대학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제공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TNE 방식임¹¹⁾.
- 온라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TNE의 형태로 원격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함.

- 다만, 위와 같은 대표적 유형으로 제시하였더라도 TNE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매우 다양한 변형과 혼합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국가별 규제, 협력 구조, 학위 수여 방식, 교육 제공자의 역할 분담 등에 따라 브랜치 캠퍼스와 프랜차이즈 요소가 결합되거나, 공동·복수학위가 트위닝 방식과 혼합되는 등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학습이 기존 유형들과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분류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TNE가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TNE 유형화는 개념적 이해를 돕는 기본 틀일 뿐, 실제 프로그램은 위 유형들을 유연하게 넘나 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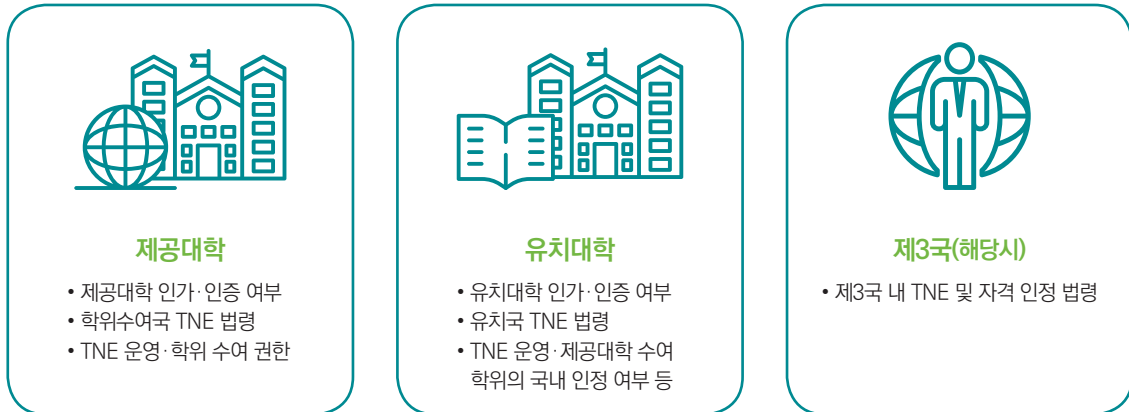


〈그림 3〉 TNE 유형 분류

11) British Council. (2023). Transnational education strategy 2023-25. <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transnationaleducationstrategy.pdf> 참고

IV TNE 형태로 수여된 자격의 인정

1) TNE 자격 평가 고려 사항



〈그림 4〉 TNE 자격 평가시 고려 사항.

- 제공대학/학위수여국
 - 제공대학의 학위수여국 내 인가(recognition/authorization) 및 인증(accreditation) 여부
 - 학위수여국 내 TNE 관련 법령 및 규제
 - 학위수여국에서 제공대학이 법적으로 외국에서 TNE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
- 유치대학/유치국
 - 유치대학의 유치국 내 인가(recognition/authorization) 및 인증(accreditation) 여부
 - 유치국 내 TNE 관련 법령 및 규제
 - 유치국에서 유치대학이 법적으로 TNE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을 갖는지와 해외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시 국내 인정 여부
- 공동학위과정에 한해서는 EAR(European Area of Recognition) 매뉴얼¹²⁾에서 자격 인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협력하는 대학, 즉 제공대학과 유치대학들이 소재한 국가에서 각각 인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함.
 - 해당 TNE 프로그램이 협력 당사자인 대학들에서 인정받아야 함.
 - 수여된 학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협력 대학 모두의 기관장 명의로 수여되어야 함.
 - 프로그램의 질(quality)이 적절히 평가받아야 함.
- 학위수여국과 유치국이 아닌 제3국에서 TNE 형태로 수여된 자격의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제3국에서의 TNE 자격 인정 관련 규정, 법령까지도 확인해야 함.

12) ENIC-NARIC 네트워크의 자격평가자들을 위한 자격 인정 매뉴얼로 2023년에 두 번째 버전이 발간. <https://www.enic-naric.net/page-ear-manual/>

2) TNE 자격 인정 사례와 고려할 사항

- 대한민국은 자격의 인정 주체(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가 교육부나 한국국가학위정보센터가 아니라 '자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대학과 기업, 개인'임. 그러나 자격인정주체가 TNE 형태로 취득한 자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며, 다음 사례를 통해 해당 요소를 파악해보고자 함.
- 영국 A대학의 브랜치 캠퍼스인 말레이시아 B대학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의 한국 내 인정 가능성
 - 이 경우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B대학은 영국 A대학의 국제 브랜치 캠퍼스로, B대학을 졸업할 경우 영국 A대학의 학위가 수여됨. 말레이시아는 1996년 사립대학교법을 도입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유수의 해외 대학이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 상기 형태의 TNE 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
 - 자격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표 2〉 영국 대학 브랜치 캠퍼스에서 취득한 TNE 자격 인정 고려 요소

구분	자격 인정 시 고려 요소
학위수여국의 인가	영국 A대학의 영국 내 인가 및 인증 여부
학위수여국의 해외 교육운영 및 학위 수여 권한	영국 법령상 A대학이 말레이시아에서 브랜치캠퍼스를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국 내 유치대학 등록·승인 여부	말레이시아 자격등록부(Malaysia Qualifications Register, MQR)에 말레이시아 B대학 및 운영 교육과정 등록 여부
학위 인정 범위 및 자격 수준	- 말레이시아 B대학에서 수학 후 수여되는 영국 A대학 학위가 영국과 말레이시아 각각에서 인정되는지 여부 - 해당 학위가 영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어떤 자격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국 인정 환경	대한민국 내 TNE 형태로 수여된 자격의 인정 관련 법·제도 존재 여부 및 내용 *대한민국은 교육과정 수출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것 이외에는 TNE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V

국내 TNE 질보장 관련 법령 현황

- 한국에서 TNE는 학습 이수 범위와 학위 수여 형태에 따라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수준: 일부학점이수형(학점교류 등)
 - 제2수준: 공동·복수학위형(트위닝 프로그램)
 - 제3수준: 전과정 이수형(프랜차이즈, 합작학교)
- 한국의 TNE 관련 법령과 질보장 체계는 제2수준과 제3수준, 즉 학위의 수여가 수반되는 단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제1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국내 대학의 해외 TNE 운영에 대한 질보장 요건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자교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운영하거나,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국내·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복수학위 수여 시 협력하는 외국대학은 반드시 자국 정부 또는 공인 평가인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자교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운영하거나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 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4조, 제54조의2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TNE 운영에 대한 질보장 요건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는 ‘외국에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시설과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동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더불어 동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외국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¹³⁾.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제외한 지역에 설립되어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은 정규 학교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부의 관리 및 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13)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 안내(<https://www.isi.go.kr>) 참조

VI

나가는 글

- TNE를 통해 취득한 학위는 특정 국가의 고등교육 시스템에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학위보다 자격 인정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움. 학위수여국과 유치국의 법·제도 차이, 질보장 체계의 상이성 등이 결합되면서 국가 간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또한 TNE에는 제공대학, 유치대학, 정부 및 규제기관, 인가기관,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함. 이해관계자별로 TNE의 목적·구조·책임 범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경우, TNE의 개념 정의부터 규제 방식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이러한 점은 결국 질보장과 자격 인정의 과정에서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 TNE 자격 인정과 질보장 도전과제
 - 우리나라는 약칭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제외하면 TNE 자격 인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나 규제가 부재하며, 현재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격 인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임. 이에 따라 외국 고등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일부 해외 학위과정(예: 국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제공되는 해외 대학 학위 프로그램 등) 중에는 교육부의 인가·신고 또는 관리·감독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제도권의 질보장 체계 밖에 놓이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TNE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격 인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에서 TN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신고·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아울러 TNE 제공 기관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국민과 대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적 정보 등록부(public register)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TNE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인가·인증 여부, 학위수여국 등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학습자를 보호하고 TNE 자격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출 계획의 타당성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질 관리 기준 마련 등이 요구되며, 이는 국가 간 협력 및 정보 교류 강화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TNE 자격 인정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나 규제가 부재하여, 실제 자격 인정의 책임은 개별 대학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TNE 학위의 성격, 운영 주체, 운영 주체의 인가·인증 여부, 교육과정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대학 스스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 간 법·제도 차이와 TNE 프로그램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대학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청됨. 따라서 대학은 TNE 학위·자격을 평가할 때 ▲학위수여국과 유치국의 인가·인증 체계, ▲프로그램 운영의 합법성, ▲질보장 수준 등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이는 학습자 보호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함.